

# GAAP : 기업회계기준 브리핑

## 금융기관 금리위험 회계의 전환점: IASB 위험경감회계(RMA) 공개초안의 의미

### 왜 새로운 회계모형이 논의되고 있는가

- 현행 IFRS 9는 위험 포지션이 빈번하게 변동하는 개방형 포트폴리오(또는 '매크로') 위험회피회계를 다루지 않을 뿐만 아니라, 개방형 포트폴리오를 전제로 설계되지 않았음
- 또한 고정금리 항목과 변동금리 항목이 혼재된 조합에서 재조정위험(repricing risk)에 노출되는 경우 기업의 위험관리 상황을 완전하고 투명하게 보여주지 못함
- IASB는 이를 해결하고자, 위험경감회계(Risk Mitigation Accounting)에 대한 새로운 접근법을 개발하여 RMA 공개초안(ED)을 발표('25.12.3)하고, 기업의 영업 및 위험관리 활동의 정교성 수준에 따라 유동적으로 적용할 수 있도록 하였음

### RMA(Risk Mitigation Accounting) 모형의 기본 철학

- RMA 모형은 금리 재조정 위험을 '순 기준(net basis)'으로 관리하는 은행 등의 실제 위험관리 방식을 재무보고에 반영하는 것을 목표로 함
- 기존 DRM(Dynamic Risk Management) 프로젝트를 발전시킨 결과물로, 위험관리 활동의 경제적 효과를 손익에 보다 충실히 연결하려는 시도임
- 적용은 선택 사항이며, 소급 적용이 아닌 전진적 적용을 전제로 함

- 적용대상 기업은 재조정위험을 순액 기준(net basis)으로 경감하고 있으며, 기업의 사업활동 및 위험관리 활동이 다음과 같은 특성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임
  - ① **(개방형 포트폴리오)** 기업의 사업활동으로 인해 재조정위험에 노출되는 금융상품의 인식 및 제거가 있을 것
  - ② **(명확한 한도)** 위험관리전략은 '경감된 이자율(mitigated rate)'을 기초로 재조정위험이 일정 범위 내에서 관리되기 위한 위험 한도(risk limits)를 명시하고 있을 것
  - ③ **(전략과 일치)** 위험관리전략에 따라 파생상품을 사용하여 기초 포트폴리오에서 발생하는 재조정위험을 순액 기준으로 경감하고 있을 것
- 기초 포트폴리오에 포함 가능한 항목은 다음과 같음
  - ① **(자산)** AC 및 FVOCI 측정 금융자산
  - ② **(부채)** AC 측정 금융부채
  - ③ **(미래 거래)** ①과 ②의 인식과 제거로 이어질 미래 거래 (예상 재투자, 예상 차환, 확정계약, 발생 가능성이 매우 높은 예상 거래)

## RMA 모형을 구성하는 핵심 요소

- 위험관리 전략을 명확히 문서화하고, 재조정 기간대별 허용 가능한 위험 한도를 설정함
- 관리 기준이 되는 기준금리(benchmark rate)를 명시함
- 위험관리 이전의 순 재조정 위험 노출(Net repricing risk exposure)을 산정함
- 실제로 경감하고자 하는 위험의 절대 금액을 '위험경감목표(Risk mitigation objective)'로 정의함
- 위험경감목표를 반영하는 가상의 기준 파생상품(Benchmark derivatives)을 설정함
- 외부 거래상대방과 체결한 금리 파생상품을 지정 파생상품(Designated derivatives)으로 지정함

## 손익 인식 구조의 특징

- 요건 충족 시, 지정 파생상품과 대응되는 '위험경감조정(Risk mitigation adjustment)'을 손익계산서가 아닌 재무상태표에 인식함
- 위험경감조정은 지정 파생상품과 기준 파생상품의 누적 손익 중 절대 금액이 작은 금액으로 측정함
- 지정 파생상품 손익 중 위험경감조정을 초과하는 부분은 즉시 당기손익에 반영함

- 위험경감조정은 기초 포트폴리오의 금리 재조정 효과가 손익에 반영되는 기간에 걸쳐 체계적으로 손익으로 환입함

## 유효성 판단과 조정 메커니즘

- 위험경감목표가 순 재조정 위험을 실제로 감소시키는지에 대한 전진적·사후적 테스트가 요구됨
- 위험경감목표는 각 재조정 기간대별 순 재조정 위험을 초과할 수 없음
- 기초 포트폴리오 변경, 조기상환, 예상 거래 변동 등 예상치 못한 변화 발생 시 기준 파생상품을 조정함
- 누적 위험경감조정이 회수 가능한 순 재조정 위험의 현재가치를 초과하는 경우, 초과분은 즉시 손익에 반영하며 이후 환입되지 않음

## 실무 적용 시 주요 쟁점

- 이미 기존 IFRS 9 위험회피회계로 재조정(금리) 위험을 위험회피하고 있는 대상은 RMA의 기초 포트폴리오에 포함 불가하므로 전반적인 위험관리 및 위험회피회계 적용의 접근법 검토 필요
- 기준 파생상품 산정, 위험경감조정 초과 판단 과정에서 상당한 판단과 시스템 역량이 요구됨
- 연결재무제표 기준에서는 내부거래 및 내부 파생상품이 배제되어, 실제 위험관리 방식과 회계 간 괴리가 발생할 수 있음
- 자본으로 분류된 금융상품을 금리위험 관리에 포함해 온 경우, 현행 관리 체계와의 정합성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함

## 영향을 받는 금융회사

- IAS 39 매크로 공정가치 위험회피회계를 적용 중인 은행은 RMA 도입 시 모든 기존 위험회피 관계를 중단해야 함
- IFRS 9 현금흐름 위험회피를 적용 중인 은행은 기존 방식을 유지할 수 있으나, RMA 전환의 실익을 전략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음
- 보험사 역시 금리위험 관리 방식과 RMA 모형의 적합성 여부가 중요한 논의 대상임

## 재무 담당자를 위한 시사점

- 공개초안 의견수렴 기한은 2026년 7월 31일까지임
- 개별 기업의 필드 테스트 결과는 2026년 11월 30일까지 비공개 제출 가능함
- 회계·리스크·ALM·IT 부서 간 협업을 통한 사전 영향 분석이 필수적임
- RMA 모형은 자산부채관리와 재무보고 간 연결성을 강화하는 계기가 될 수 있으나, 도입 여부에 대한 신중한 비용·편익 분석이 요구됨